

의안  
번호

593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6. 04. 16.

전문위원 김 동 성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593호
- 다. 제출일자 : 2026. 04. 03.
- 라. 회부일자 : 2026. 04. 07.

### 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결(의안번호 제2025-312호)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제적 및 폐기 도서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에 폐기 또는 제적 자료의 무상배부 규정 신설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6. 02. 26. ~ 2026. 03. 18.

- 의 견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·폐기 도서를 재활용하고 무상 배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안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를 기관·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. 현재 도서관 자료는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 처리되고 있으며, 최근 폐기도서 비율이 2021년 4.82%에서 2025년 9.04%로 지속 증가하는 등 상당 규모의 자료가 폐기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따라 단순 폐기 중심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자료의 공공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, 금번 개정은 도서 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.

연도별 도서 폐기 현황

구분	총 장서 수	폐기도서 수	비율	비고
2021	726,577	35,089	4.82	
2022	724,353	36,154	4.99	
2023	696,473	37,463	5.38	
2024	733,393	61,769	8.42	이음도서관 폐관
2025	737,251	66,636	9.04	

- 아울러 현행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근거 없이 폐기도서를 무상 배부할 경우 「공직선거법」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, 무상배부의 대

상과 범위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미비에 따른 잠재적 위법성 및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폐기·제적 자료의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, 자원 순환 촉진 및 행정의 합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.
- 특히, 폐기 중심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'공공적 재활용'을 제도화함으로써 도서 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, 무상배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됨.